

2021 윤리준법경영 브리프스 <10월>

(주제: 사회적 책임투자와 ESG와의 관계)

COVER STORY

도덕적인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SRI)'는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윤리경영전략(ESG 경영전략)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코칭

사회적 책임과 책임투자



이호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사)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Q1. ESG 경영환경에서 사회적 책임투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에 따른 윤리경영전략(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주의 부(wealth)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는 많은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하여 그 한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소비자, 주주, 투자자 등)의 가치관과 사고체계,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및 현재의 재무적 성과정보 만으로는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변화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한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 특히 다국적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기업의 ESG 성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공동체의 가치창출과 연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력 제고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란 구체적으로 투자의사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환경성과(environment), 사회적 성과(social),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ESG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실천을 고민하도록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 기업이 이렇게 커다란 환경변화를 경험할 때에는,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그 변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 동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진정성과 기업의 윤리 경영이 기업가치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영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주요 평가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ESG성과지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ESG

경영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 실천에 대한 실질적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전략으로도 보기 어렵다. 기업별 ESG 추진 전략은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은 기업의 목적 사업 및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주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Q2.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기준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투자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기준 수립은, 사회적 책임투자의 방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ESG평가기관들의 평가요소와, 실제 투자 주체인 기관투자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평가기관이 분석하는 요소는 특성상 매우 포괄적이며, 기관투자자들의 기준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들을 통해 기업이 받은 ESG 평가 성적표는 평가요소의 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인 것이다. 또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위기대응 역량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 촉발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 및 수익모델, 인적·물적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용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 기업이 채택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가령 수출위주의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주요 수출국의 환경과 관련된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효성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이다.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플랫폼산업 및 금융산업의 경우 고객 개인정보 보안 및 금융정보의 보안이 중요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은 단순히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대응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경영의 핵심 철학은 윤리경영이며, 윤리경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시스템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다.

사례돌보기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 지배구조

주요 대기업은 ESG 경영을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 ESG 평가기준 수립, 경영프로세스 점검 등 ESG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것이다. ESG가 대두되게 된 것은 사실 책임 있는 투자, 지속가능한 투자 등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한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의 핵심적 요구는 기업의 리스크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투자자는 ESG를 중시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기업은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 추구에 부합하면서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자금 조달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시장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이에 따른 ESG 평가기관의 평가요소나 사회적 책임투자를 수행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평가요소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각 요소에 대한 평가요인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환경변화에 따라 이러한 기준들은 변화할 수 있다. ESG 경영 실현에 있어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배구조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뇌물이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증진하여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투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건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투자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유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가요소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기업윤리, 뇌물 및 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정경쟁 등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지배구조 관련 구성요소로는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임원보상, 로비, 정치기부금,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1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유한양행은 사내이사를 7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사외이사를 3명에서 5명으로 그 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경영진과 의사회를 분리하여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성발전소에서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서 유한양행은 제일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SK 하이닉스도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를 분리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지배구조의 건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ESG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관련 기업들의 대응이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지배구조 관련 기업들의 대응은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배구조 관련 고려요소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뇌물과 부패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ESG 경영과 관련하여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로 지배구조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과 사회는 각각 35%, 23.7%의 응답을 보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지배구조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는 경영권 승계 36.3%,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32.7%, 일감 몰아주기 1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준수해야 될 행동규범과 관련된 규칙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기업 평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기관의 수가 매우 다양하며 기관들이 각각의 평가기준과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존재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는데 있어 지배구조 관련 요인이 다른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관련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FCPA 위반사례를 통해 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해

사례 1 : Morgan Stanley

2012년 미 법무부는 모건스탠리의 중국 부동산사업 부문 이사였던 가스 피터슨(Garth Peterson)에게 중국 상하이 빌딩 소유 지분을 중국 공무원에게 헐값으로 넘겨 미 FCPA 법 위반으로 기소

FCPA법 위반 혐의로 가스 피터슨은 징역 5년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모건스탠리 법인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해 면책됨

사례 2 : Airbus 사건

에어버스는 항공기 판매를 위해 불법 브로커인 제3의 중개인을 고용, 제3자 뇌물지급 혐의로 2016년부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미 법무부(DOJ) 조사를 받아들임

이에 따라 미 FCPA법, 국제무기거래 규정인 ITAR 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미 법무부에 약 5억 2600만 유로(7천억 원), 프랑스 정부에는 21억 유로(2조 8천억 원), 영국 검찰과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36억 유로 벌금 지불에 합의

두 사례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위반 사례이다.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건스탠리는 기업의 책임을 면책 받았고 에어버스는 천문학적 금액의 합의금과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건스탠리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법인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이 기업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하려면 '조직(기업)에 관한 미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1. 조직(기업)에 관한 미 연방양형 가이드라인(제 8장)의 연혁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연방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87년에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이 1991년 반영되었다. 이 양형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방법상 범죄를 저지른 조직(기업)에 형을 선고하는 기준인 FSGO(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를 마련하고 기업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감형요소로 제시한 것이다.

2. 기업양형 8장의 개요

제8장은 조직(기업, organization)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직이 범죄행위를 예방, 탐지 및 보고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벌, 적절한 억제 및 인센티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한 것은 한국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법인과 같은 조직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기업이 효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범죄를 줄이는 노력에 대하여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양형에 관한 8장의 구성체계는 크게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파트 B의 법규준수·윤리 프로그램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내용과 기업범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기본 유책성 점수(5점)(base culpability scor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방양형 가이드라인 제8장의 구성>

파트별	구성
파트 A	일반 적용원리 (Part A General Application Principles)
파트 B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구제 및 효율적인 법규준수·윤리 프로그램 (Part B Remedying harm from Criminal Conduct, and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파트 C	벌금 (Fines)
파트 D	기업의 보호관찰 (Organizational Probation)
파트 E	특별평가, 몰수 및 비용 (Special assessments, Forfeitures, and Costs)
파트 F	보호관찰 위반- 기업 (Violations of Probation- Organization)

3. Part B :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8B2.1.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에서는 조직(기업)의 범죄행위 예방 및 법 준수를 위한 조직문화 구축 의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시 반영사항,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된 주기적 평가 및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범죄행위 예방 및 법 준수를 위한 조직문화 구축 의무	1)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며, 2) 법 준수와 관련한 윤리적 행위와 헌신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시 반영사항	조직문화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 1) 조직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 - 조직경영진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인지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감독 - 조직고위직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고위급 인사 중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책임자 지정 - 조직 내 구성원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져야 함 2) 불법행위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실무급 관리인사의 조직 내 배제 노력 3)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노력 4) 구성원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기업 구성원이 장래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익명시스템 구축 5)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준수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위반 시 제재조치 및 이에 대한 홍보 6) 범죄행위 발생 후 유사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정 및 합리적 조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평가 및 조치사항	조직의 범죄행위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범죄행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반영

4. Part C : 벌금

기업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벌금을 처분 받게 되는데, 기본 벌금의 계산은 기업 범죄에 대한 범죄수준(offense level)으로 결정되며 이 범죄수준은 유책성 점수(5점)(base culpability score)에 기초하여 벌금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된다. 벌금 조정 시 고려사항 중에 효과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윤리프로그램 운영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벌금 가감 조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범죄행위의 관련 또는 묵인, ② 과거의 위반행위, ③ 명령위반, ④ 정의실현의 방해, 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운영 여부, ⑥ 자율보고, 협력 및 책임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범죄 당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포인트를 빼지만 범죄 인

지 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지연하는 경우 3포인트를 감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업의 고위급 인사,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 부서에 있는 자, 이러한 개인이 범죄에 참여했거나 봐주거나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 3포인트를 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조직이 5,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서 (i) 조직의 고위급 인사가 범죄에 참여하거나 봐주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ii) 실무급 관리인사에 의한 범죄의 용인이 조직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경우에는 5점을 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업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경우 유책성 점수를 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운영 책임이 있는 개인이 운영기구 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와 같은 적절한 하위그룹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지는 경우,
- (ii)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이 외부 조직이 발견하기 전에 또는 이러한 발견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전에 위반행위를 탐지한 경우,
- (iii) 조직이 즉각적으로 관할 당국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iv)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의 운영책임이 있는 개인이 범죄행위에 참여하거나 봐주거나 고의로 무시하지 않은 경우

5. 미 연방양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은 기업의 기소여부 및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양형가이드라인을 통해 볼 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은 유책성 기준 점수를 적용해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기업 내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위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 연방양형 가이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의무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반영사항 등을 참고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면 예기치 못했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tep by Step

윤리교육 프로그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업은 각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5대 법정 의무교육 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Q. '청탁금지법' 명시된 양벌규정이 무엇이며 기업이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양벌규정'은 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 기관의 위반 당사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법인·단체·개인 포함)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구별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직자등과의 업무수행 시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민간기업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4개로 세분화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 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예외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내용 및 처벌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시 과태료 부과



※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합니다.

○ 허용되는 금품 수수의 종류 및 가액

구분	내용	가액
•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선물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연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 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 원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2. '청탁금지법' 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유형 및 제재 수준

위반행위 유형	조문	위반행위 유형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제23조 제2항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제3자를 위 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23조 제3항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 청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품 수수 금지	제22조 제1항 제3호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공직자등 또 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 초 과 금품 등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3조 제5항 제3호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제공	제공 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3. 양벌규정 면책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업은 양벌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 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 기업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운용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합니다.
 - 윤리강령 및 징계기준 마련
 - 청탁금지법 등 준법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리스트 작성

- 기업·단체 등의 현실에 적합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
-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 및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직원들의 법령 위반행위 적발 시 징계기준 준수 등

기업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수립·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내부고발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세계최초 앱마켓규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세계최초 앱마켓규제인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 원 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 참고: 한국경제. 2021. 09. 01.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9013149g>

2. 금감원, 국내외 증권사에 "시세 조종 혐의"로 480억 원 과징금 부과 예고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곳(6개 국내 증권사, 3개 해외 증권사)에 시장질서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약 4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돕는 것으로,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세 조종이 없었다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참고: 머니투데이, 2021.09. 0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318482829254>

해외 동향

1. 아마존의 'AI로 저성과자 해고' 횡포, 법으로 규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아마존을 겨냥해 '생산성 알고리즘'을 직원들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마존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 성장한 3861억 달러(약 447조 원)에 달했지만, 그 이면에는 직원들의 혹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아마존과 같은 창고 관리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경우 캘리포니아주가 해당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알고리즘들이 직원들 건강을 저해하도록 업무를 할당하는 걸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참고: 매일경제. 2021. 09. 0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9/864089/>

2. ECB, 기후변화 방치 땀 유럽 GDP 10% 하락 경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유럽을 강타한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피해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ECB는 향후 30년 동안 유럽의 400만 개 기업, 1600개 은행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잠재 영향력을 계산한 결과,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유럽 국내총생산(GDP)은 10% 감소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의 채무불이행 확률은 2050년까지 37.5%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CB 부총재는 "녹색 전환 비용과 미래 자연 재해 피해를 모두 완화하려면 초기에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참고: 매일경제. 2021. 09. 24.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9/910276/>

행사소식

AI SUMMIT 2021 SEOUL

AI Summit Seoul(AIS)은 경영자, 각 부서의 현업에서, AI 관계자 및 IT 엔지니어까지, AI와 비즈니스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수준의 지식 행사

주최 : DMK(MIT Technology Review)

일시 : 2021년 12월 8 ~ 9일

방법 : 온라인 스트리밍 & 현장 참가(코엑스 그랜드 볼룸)

참고 : <https://aisummit.co.kr/>

3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새로운 도전 환경에서 법률 리스크 검토 및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방향 등에 대한 정부, 사내 법률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및 어드바이저 등의 견해 발표 및 네트워킹을 위한 정기 컨퍼런스

주최 : The Canadian Institute/American Conference Institute/C5 Commun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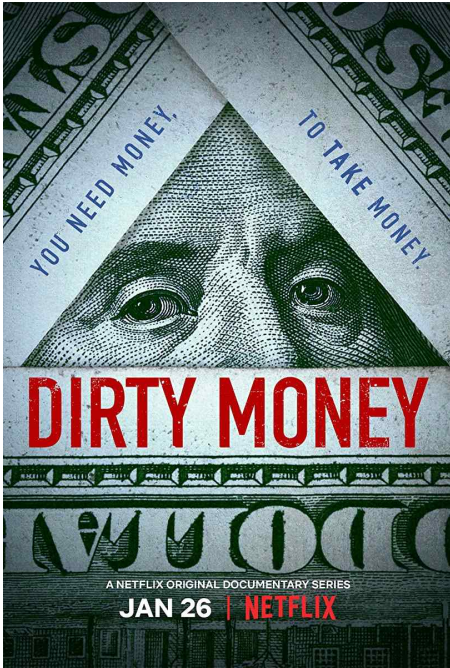
일시 : 2021년 11월 30일 ~ 12월 3일

장소 : 온라인 / Gaylord National Resort &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참고 : <https://www.americanconference.com/fcpa-dc/>

문화 속 기업윤리

고객과 사회에 대한 기만, 기업의 비윤리 행위 다큐멘터리, '검은 돈 - 그린디젤의 배신'



'검은 돈 그린디젤의 배신'은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 기업의 비윤리 행위가 은폐 가능했던 사회구조의 문제점 등을 세세히 파헤친 다큐멘터리다.

'뛰어난 연비', '합리적인 가격', '환경오염 없는 청정 배기가스' 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유럽 전역에 디젤차 열풍을 몰고 온 폭스바겐은 이후 미국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하지만 미국 내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판매실적을 내는 것이 쉽지 않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이라는 비윤리적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처음 배기가스 조작장치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폭스바겐은 대대적인 리콜을 선언했지만, 이는 배기가스 배출량 실험을 멈추기 위해 조작장치를 더욱 교묘하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했다. '청정디젤' 이미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성을 역설했던 폭스바겐은 이 사건으로 주가가 31%나 하락했고, 미국에서만 55만 대의 차량을 재구매 방식으로 회수해야 했으며, 2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폭스바겐이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는 고객들을 졸지에 환경법 위반 공범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회사를 위해 헌신한 모든 조직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 직간접으로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 모든 일이 '회사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며 책임은 회피하려는 행태는 고객, 기업 구성원, 그리고 사회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기업의 변명은 신뢰만 떨어뜨릴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환경오염의 가속화,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직과 공정을 갈망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영원히 은폐되지 않으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업경영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이미지출처: google

윤리 한 스펀

윤리 한 스펀

출장 중에는 해당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하거나 출장 일정 등을 속여 **허위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윤리 준수는 우리의 양심을 지킵니다.

공감+

공감+

피터드러커, '사람관리 기본 원칙'

- 1** 나의 결정으로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도록 결정한 나의 잘못**이다.
- 2**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의사결정 권한**도 함께 주어야 한다.
- 3** 경영진이 내리는 의사 결정 중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람과 관련된 의사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 4** 새롭게 영입한 사람에게는 리스크가 많은 업무나 신규 업무 대신, **예상 가능한 업무**를 맡겨 그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직원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것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윤리문자



독자 퀴즈

Q.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투자방식으로 도덕적인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 ① 비자본투자
- ② 사회적 책임투자
- ③ 공통투자
- ④ 대체투자

- ◆ 지난 호 정답: ①
-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